

판매와 납품에 관한 약관

1. 적용 및 유효성

- 1.1 본 약관 및 구체적인 주문서는 납품하는 노보자임스 회사(이하 “노보자임스”라고 함)와 주문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 간의 계약을 구성한다.
- 1.2 오퍼, 주문, 구매조건 등에 기재된 고객의 특별 혹은 일반 요건들은 노보자임스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는 한 아래 조건의 면제를 구성하지 않으며, 본 약관은 고객과 노보자임스 간에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의 주제사항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의 전부로 간주된다.

2. 주문

- 2.1 주문서는 구체적인 제품, 수량, 가격, 총구매가격, 선적 지칭, 납품 희망일, 판매처, 선적 주소, 및 기타 특별한 지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주문은 노보자임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격

- 3.1 가격은 부가가치세(VAT), 유사한 판매세 및 기타 다른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가격은 합의된 인코텀즈 규약(인코텀즈 2020)에 따른 납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3.2 노보자임스는 통지없이 가격표를 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그렇게 수정된 가격은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이미 확인된 주문의 가격은 변경되지 않는다.

4. 지급조건

- 4.1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노보자임스는 제품의 납품 전에 청구 금액의 지급기한을 표시한 청구서를 고객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 4.2 만약 청구서에 명기된 지급기한 내에 노보자임스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보자임스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납품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노보자임스는 지급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4.3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지급은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노보자임스의 은행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급이 연체된 경우 고객은 연체된 금액에 대해 청구서에 명시된 지급일로부터 노보자임스가 대금을 받은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4.4 고객은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의 수임료와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의 추심을 위하여 발생한 노보자임스의 모든 비용과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5. 납품

- 5.1 고객의 주문서를 받으면 노보자임스는 납품일을 결정한다.
- 5.2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제품의 납품은 노보자임스 창고인도(EXW) 조건(인코텀즈 2020)으로 납품된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경우 노보자임스는 운송수단을 결정하고 고객이 지정한 단일 장소로 선적한다. 노보자임스는 제품을 1 회 혹은 분할 선적을 통해 납품할 수 있으며 각 선적에 대해 별도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 5.3 제품의 납품은 고객이 노보자임스가 만족하는 신용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노보자임스는 임의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물품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 지급 또는 장래의 주문에 대한 선지급을 포함하여 대금 지급에 관한 보장을 받기 전에는 고객에 대한 통지 혹은 책임 없이 언제라도 이행 또는 납품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5.4 제품과 관련한 손실 위험은 합의된 인코텀즈에 따라 고객에게 이전된다. 제품의 소유권은 구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만 고객에게 이전된다.

6. 제품 검사, 인수 및 일치의 의무

- 6.1 고객은 납품을 받은 즉시 제품에 육안상 확인되는 하자가 있는지 또는 해당 구매주문서나 제품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하자 또는 해당 구매주문서 및/또는 제품 규격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은 노보자임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일치하는 제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서에는 제품이 해당 구매주문서 및/또는 제품 규격과 어떤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6.2 고객은 제품 규격과의 불일치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노보자임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육안상 확인되는 하자 혹은 해당 구매 주문서와 불일치 사항은 고객이 해당 제품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노보자임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는 고객은 해당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은 노보자임스에게 제품을 점검 및/또는 불일치하는 제품의 샘플을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6.3 만약 제품의 하자 또는 해당 구매주문서 및/또는 제품 규격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노보자임스는 이러한 제품을 고객의 추가비용 없이 교체하기 위한 상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고객이 거절하는

제품에 대해 본 약관에 의한 고객의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되며, 상기와 같이 제품을 교체하면 일치하지 않는 주문은 납품이 지체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사용

- 7.1 고객은 제품 취급의 요건, 작업 환경, 제품 문서화 및 관공서 요건(안전 및 작업환경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해당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제품의 구체적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인정한다. 고객은 특정한 적용에 있어서 효소 및/또는 미생물 제제의 사용이 몇몇 국가에서는 특별한 승인을 필요로 하고 고객이 전적으로 이러한 승인을 얻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고객은 제품의 사용이 특허나 기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노보자임스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인정한다.

8. 제한된 보증

- 8.1 노보자임스는 (i) 제품의 소유권이 있고 (ii) 제품은 제 3 자 유치권 혹은 저당권이 없는 상태이며 (iii) 노보자임스로부터 고객에게 제품의 양도 시 해당 제품은 판매 시 적용되는 제품 데이터 자료에 포함된 해당 제품 규격에 일치하며(제품 데이터 자료는 변경될 수 있음) (iv) 판매된 효소 및/또는 미생물 제제 뿐만 아니라 효소 및/또는 미생물 제제의 생산이 제 3 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증하고 진술한다.
- 8.2 이러한 보증은 노보자임스가 실제로 납품한 것과 동일하게 파손되지 않은 포장으로 고객이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고의적 또는 우발적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에 관한 노보자임스의 보관이나 취급 지침과 다른 보관이나 취급은 물론 제품의 품질이나 특성에 직접적인 책임을 주는 파손, 누수 혹은 분할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품보증은 무효로 간주된다.
- 8.3 상기의 제품보증은 상품성, 특정 목적 혹은 용도의 적합성,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제 3 자 지적재산권의 비(非)침해, 및 법률, 처리나 수행 과정, 관행 혹은 업계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명시적, 묵시적 등의 기타 보증을 대신하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배타적인 보증이다. 노보자임스는 고객 혹은 다른 사람이 노보자임스를 대신하여 제품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을 하도록 승인하지 않았으며, 고객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종류의 보증도 노보자임스를 구속하지 않는다.

9. 의무의 제한 및 면책

- 9.1 노보자임스는 제품이 원래의 용도 및 관련 안전 서류에 따라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결함에서 해당 책임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제 8 조의 제한 보증의 위반 및 해당 법령의 강제조항에 의한 제조물 책임 청구에서 고객을 배상하고 면책한다.
- 9.2 본 약관 혹은 노보자임스가 판매한 제품과 관련한 고객의 조치는 해당 조치의 원인이 발생한 후 12 개월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본 약관에 기재된 보증내용이나 본 약관 혹은 이에 따라서 공급된 제품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노보자임스의 책임은 직전 12 개월 동안 해당 제품의 구매가격으로 제한된다.
- 9.3 본 약관상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보자임스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불법행위(과실 및 엄격한 책임을 포함) 등에 기인하여, 본 약관, 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실이익,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 특별한, 간접적, 징벌적, 부수적 혹은 결과적인 손해 혹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손해 혹은 손실은 기대되는 절약의 미실현, 제 3 자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 혹은 기타 어떤 종류의 상업적 혹은 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해당 손해 혹은 손실의 가능성이 노보자임스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9.4 상기 제한된 보증 및 면책 조항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고객은 모든 종류 혹은 성격의 책임, 의무, 손실, 손해, 수수료, 벌금, 위약금, 소송, 청구, 판결, 합의, 절차, 경비, 비용 및 상환금에 대하여 노보자임스를 면책하고 배상하며, 이러한 면책 배상은 노보자임스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나 절차의 항변, 항소, 합의를 위한 모든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경비와 비용은 물론 본 약관에 의한 제품 주문으로 인하여 제 3 자가 노보자임스에게 부과, 지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그에 관련한 모든 조사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0. 양도

- 10.1 노보자임스는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약관에 의한 자신의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양도하거나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업무나 서비스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 10.2 고객은 노보자임스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약관에 의한 의무, 권리 혹은 지급 대금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고객은 해당 양수인의 본 약관 불이행 및/또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노보자임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계속 부담함을 동의하고 인정한다.

11. 지적 재산권

- 11.1 본 약관에 의한 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특허, 특허신청 혹은 상표를 비롯하여 제품에 관계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 라이선스, 혹은 기타 어떤 종류의 이익도 고객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는다. 단, 노보자임스가 고객에게 달리 통보하지 않는 한 고객은 제품 서류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노보자임스에서 구매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보자임스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묵시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2. 불가항력

- 12.1 노보자임스는 자신이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위해 수락한 주문과 관련하여, 화재, 파업, 노사분쟁, 전력장애, 원자재 취득불가, 전쟁, 천재지변, 정부 규정, 고객이 제공한 정보의 부정확성·지연·불완전, 혹은 노보자임스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기타 이유 혹은 상황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납품 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12.2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본 약관에 의한 노보자임스의 이행기간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노보자임스는 단독 판단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들 사이에 제품 및 납품을 배정할 수 있다.

13. 준거법 - 관할권

- 13.1 본 약관은 관할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에 관계없이 피신청인 국가의 실체법에 따라 이해되고 해석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은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약관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한다. 본 약관에 의한 제품의 판매 혹은 본 약관의 적용이나 해석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있을 경우 피신청인 국가에서 ICC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노보자임스 및 고객이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ICC 는 본 약관에 따라 노보자임스 및 고객 간에 발생한 다수의 청구 및 다수의 중재 사건을 최초로 정식 개시된 ICC 중재 사건으로 통합함을 원칙으로 다수의 청구 및 다수의 관련 중재 사건을 하나의 중재 사건으로 통합하는 경우 고객 또는 노보자임스 중에서 누가 피신청인에 해당되는지 배타적으로 결정한다.

2020 © Novozymes A/S